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1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1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로당 지원 운영비를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7.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제18조제2항제2호):

월 25만원→월 37.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액을 월 25만원에서 월 37만5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 할 책임이 있으며

- 같은법 제4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지원은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 개정안 요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월 37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설 등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지원액: 월 250,000원	제18조(시설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원액: 월 375,000원

- 검토의견 :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의 부담을 고려할 때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현실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 확대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액은 월375,000원으로 기존 대비 50% 인상되는 사항임

【참고자료 1: 관내 경로당 현황】

계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393	33	23	30	22	23	31	34
운산	**해미**	**고북**	**부춘**	**동문1**	**동문2**	**수석**	**석남**
35	28	30	23	18	15	16	32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로당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여가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액을 월 37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나.「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하려는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 확대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